



[2020. 4. 1.] [2020 - 308 , 2020. 4. 1.,]

(), 044 - 201 - 4256

1

1 () (" ") 125 1 , 126 1 . 3
(" ") 307 2 3

2 () ,

1. " "

2. " "

3 ()

3 2() 「 . 」
2018 7 1 3 (3 6 30)

2

4 () 125 1
14 , (" ")
. (2009. 9.10)

1. < 2009. 9.10 >

2. < 2009. 9.10 >

4 2() 「 」 48 1
6 2 4

3

1

5 () (" ")

120

.(2009. 9.10)

1

2

1.

2.

가

6 () 5 2

1

1

7 () 6 가
126 3 .(2009. 9.10)

1

121

.(2009. 9.10)

8 ()

가

5

1

2

9 () 307 2 3 1

4 3

.(2009. 9.10)

10 () 307 1 1

1 4 3

.(2009. 9.10)

11 () 307 1 2 1 4 3

.(2009. 9.10)

12 () 307 1 3 5
.(2009. 9.10)

13 () 7
.(2009. 9.10)

3

14 () 307 3 1 4 3
.(2009. 9.10)
1 4 3 .(2009. 9.10)

15 () 1 4 3 6
.(2009. 9.10)

16 ()
1 1 15 ,
1 15
90

4

17 () 4 2
4 2 1
, 가

1. 가
2. ,
3. 가
2 3 .

< 2020 - 308 ,2020.4.1.>

[별표 1]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과정 훈련기준

1. 교관

- 가. 학과교관 : 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 나. 실기교관 : 만 20세 이상으로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자(교관)이상으로서 동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 조종자피교육생 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 면적은 3㎡ 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의자·흑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
 - 사무실: 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시설

-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일 것.
-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 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항공역학(비행이론)	8
4. 비행운용 이론	7
계	20시간

나. 실기교육

- (1) 동력비행장치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과 목	동승비행시간	단독비행시간(또는 기장시간)	계
1. 장주 이착륙	8	3	11
2. 공중 조작	5	2	7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2	-	2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별표 2]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회전익비행장치과정 훈련기준

1. 교관

- 가. 학과교관 : 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회전익 비행장치 과정에 해당하는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 나. 실기교관 : 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회전익 비행장치 과정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자(교관)이상으로서 동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 : 조종자피교육생 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 : 면적은 3㎡ 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의자·흑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
 - 사무실: 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의 시설

-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일 것.
-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 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 :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항공역학(비행이론)	8
4. 비행운용 이론	7
계	20시간

나. 실기교육

회전익비행장치의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과 목	동승비행시간	단독비행시간(또는 기장시간)	계
1. 장주 이착륙	5	2	7
2. 공중 조작	3	2	1
3.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4	1	5
4. 비정상 및 비상절차	3	-	3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별표 3]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유인자유기구과정 훈련기준

1. 교관

- 가. 학과교관 : 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유인자유기구 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 나. 실기교관 : 만 20세 이상으로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유인자유기구 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자(교관)이상으로서 동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 : 조종자피교육생 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 : 면적은 3㎡ 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의자·흑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
 - 사무실 : 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시설

-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일 것.
-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 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 :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비행이론 및 운용	15
계	20시간

나. 실기교육

- (1) 유인자유기구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과 목	동승비행시간	단독비행시간(또는 기장시간)	계
1. 장주 이착륙	8	3	11
2. 공중 조작	5	2	7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2	-	2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별표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동력패러글라이더과정 훈련기준

1. 교관

- 가. 학과교관 : 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 나. 실기교관 : 만 20세 이상으로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자(교관)이상으로서 동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 : 조종자피교육생 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 : 면적은 3㎡ 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의자·흑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
 - 사무실 : 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시설

-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일 것.
-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 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비행이론 및 운용	15
계	20시간

나. 실기교육

- (1) 동력패러글라이더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과 목	동승비행시간	단독비행시간(또는기장시간)	계
1. 장주 이착륙	8	3	11
2. 공중 조작	5	2	7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2	-	2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별표 4-1]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과정 훈련기준

1. 교관

- 가. 지도조종자 : 만 20세 이상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지도조종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 나. 실기평가조종자 : 만 20세 이상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 조종자피교육생 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및 축소모형기체 또는 모의비행시뮬레이터 각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 면적은 3㎡ 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의자·흑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
- 사무실: 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시설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이며, 해당 부지를 훈련비행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농지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이 없을 것.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 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항공역학(비행이론)	8
4. 비행운용 이론	7
계	20시간

나. 실기교육

(1)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과 목	축소모형기체 또는 모의비행 시뮬레이터 비행시간	실물 등록기체 비행시간	계
1. 장주 이착륙	8	4	12
2. 공중 조작	4	2	6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1	1	2
계	13시간	7시간	20시간

[별표 4-2]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과정
훈련기준

1. 교관

- 가. 지도조종자 : 만 20세 이상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 나. 실기평가조종자 : 만 20세 이상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 : 조종자피교육생 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및 모의비행훈련장치 각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 : 면적은 3㎡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의자·흑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 사무실: 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가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의 시설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이며, 해당 부지를 훈련비행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농지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이 없을 것.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 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 :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2
3. 항공역학(비행이론)	5
4. 비행운용 이론	11
계	20시간

나. 실기교육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과 목	교관동반 비행시간	단독 비행시간	계
1. 장주 이착륙	2	3	5
2. 공중 조작	2	3	5
3.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3	6	9
4. 비정상 및 비상절차	1	-	1
계	8시간	12시간	20시간

다. 모의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비행교육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는 실기교육전 모의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비행교육을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4-3]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선)과정 훈련기준

1. 교관

- 가. 지도조종자 : 만 20세 이상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지도조종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 나. 실기평가조종자 : 만 20세 이상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 : 조종자피교육생 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선)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 : 면적은 3㎡ 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의자·흑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
 - 사무실 : 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시설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이며, 해당 부지를 훈련비행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농지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이 없을 것.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 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 :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비행이론 및 운용	15
계	20시간

나. 실기교육

(1) 무인자유기구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과 목	교관동반 비행시간	단독 비행시간	계
1. 장주 이착륙	8	4	12
2. 공중 조작	4	2	6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1	1	2
계	13시간	7시간	20시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

1. 교육훈련규정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총칙
- 나. 학사운영
- 다.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
- 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과정별 교육명
- 바. 교육 목표 및 목적

2. 제1호제나목에서 정한 학사운영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입과기준 : 피교육생이 될 수 있는 자격, 피교육생의 선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나. 교육정원(연간 최대교육인원) : 최대 교육인원은 동시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피교육생수로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관 등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편입기준

- (1) 해당과정 입과 전 다른 교육과정에 재적경력이 있는 학생을 해당과정에 편입시키는 경우 입과 전 과정의 교육받은 과목(동일과목에 한함) 및 재적 중의 성적에 따라 해당과정에 있어서의 학과교육 또는 실기교육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입과 예정 교육기간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2) 다른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과정과 동일한 과정에 재적경력이 있는 피교육생을 해당과정에 편입시키는 경우 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내용을 해당과정에 있어서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성적불량 등의 이유로 그 교육기관을 퇴학당한 자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교육을 중단한 자는 제외한다.
- (3) 학과교육 또는 실기교육만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라. 학과교육은 실기교육과 보조를 맞추어 실시하되, 학과교육이 실기교육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교육의 진도를 실기교육 시작 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규정에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아. 수료증명서 발급

(1)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피교육생에게는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교육수료증명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나) 소료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다) 수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생년월일) 및 현 주소

(라) 수료한 교육과정명(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수료를 명기할 것)

(마) 교육과정을 만족하게 수료했다는 내용의 진술

(바) 수료증명서 발급 연월일

(사) 수료증명서 발급자의 직책·성명 및 직인

자. 기록 및 보관

(1)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과한 학생의 출석, 교육훈련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피교육생별, 교육과정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록 내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교육과정명

(나) 피교육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생년월일) 및 현 주소

(다) 피교육생의 출석기록부

(라) 교육훈련 수료과목 및 내용

(마) 교육훈련 평가결과

(바) 수료일자 등

(2)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피교육생의 기록을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요약본은 준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

1. 비행실기교관은 조종피교육생에 대하여 조종연습을 감독할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실기교관은 조종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연습계획의 내용이 적절할 것
 - (2) 조종피교육생이 조종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이 있을 것
 - (3) 비행하고자 하는 공역에서 기상상태가 조종연습을 하는데 적절할 것
 - (4)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성능 및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나. 실기교관은 조종피교육생과 동승하는 경우 조종피교육생이 조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조종업무에 대하여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 다. 실기교관은 조종피교육생이 처음으로 그 형식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단독비행에 의한 조종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조종피교육생이 그 비행에 의한 조종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 (2) 조종피교육생 단독으로 이륙 및 착륙을 할 수 있을 것
 - (3) 조종피교육생이 그 연습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숙지할 것
 - (4) 조종피교육생이 그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용구를 휴대하고 그 용구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을 것
2. 실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갑작스런 기상상태를 대비한 대책 수립
 - 나. 이착륙 비행장은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와 쌍방향수신이 가능한 무선송수신 통신장비 구비할 것

[별표 7]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자 자격요건

1.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 가.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로서 전문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 항공법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u>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과정)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u>	
1. 심사 기간	
2. 심사자의 소속 및 성명	
3. 설치자의 주소·명칭	
4. 교육기관의 명칭	
5. 교육기관의 소재지	
6. 신청한교육 과정명	
7. 교육기관의 개요	
8. 심사 소견	
9. 판 정	<input type="checkbox"/> 합 격 <input type="checkbox"/> 불 합 격

10. 세부 심사 내역 (작성요령 : 심사내역란에는 심사대상 항목에 관한 세부내용을 명기할 것. 칸이 부족한 경우 칸을 늘려 사용할 것)		
심 사 대 상 항 목	적 합	부적합
10-1 설치자		
1.1 연령		
1.2 결격자가 아닐 것		
1.3 교육기관 운영능력		
의 견		
10-2 학과 및 실기교육 조직		
2.1 학과 및 실기교관		
2.1.1 연령		
2.1.2 자격증명 보유여부		
2.1.3 학과 및 실기교육경험		
2.1.4 교육 능력		
의 견		

심사대상항목	적합	부적합
10-3 교육시설		
3.1 학과교육시설		
3.1.1 강의실		
3.1.1.1 강의실 수 및 면적		
3.1.1.2 기타		
3.1.2 강의실내 설비		
3.1.2.1 책상, 의자		
3.1.2.2 흑판, 기타 설비		
3.1.3 교재		
3.1.3.1 교과서, 참고서 등		
3.1.3.2 실습교재		
3.1.3.3 비행규정		
3.2 실기교육시설		
3.2.1 훈련비행장		
3.2.2 훈련용초경량비행장치(제원·총대수·기종별대수)		
3.2.3 무선송수신통신장비 보유여부		
의견		
10-4 교육과정		
4.1 학과교육 총시간수		
4.2 실기교육 총시간수		
의견		

(제4쪽)

심 사 대 상 항 목				적 합	부적합
10-5 심사관, 심사기간(. . - . .), 심사장소()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종합의견					

출결관리대장

사업체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대장관리자	

연번	발생일	신청일	교관· 교육생 성명	사유	시작시간	종료시간	교관· 교육생 서명	관리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mm × 297mm [백상지 (80g/㎡)]

기재요령

1. 이 대장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출결을 체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합니다.
2. 대장 작성은 해당 사업체의 관리자가 하며 교관·교육생은 사유발생일 당일에 교육이 종료된 이후 관리자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합니다.
 - 1) 발생일은 관리대장 작성사유 발생 해당일자를 기재합니다.
 - 2) 신청일은 출결 정정 사유 발생 시 관리자가 정정 신청을 요구하는 일자를 기재합니다.
 - 3) 교관·교육생 성명은 관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 4) 사유는 '시스템장애' 등 관리대장 작성사유를 기재합니다.
 - 5) 시작시간은 관리대장 작성사유가 발생한 교관·교육생의 교육 시작시간을 기재합니다.
 - 6) 종료시간은 관리대장 작성사유가 발생한 교관·교육생의 교육 종료시간을 기재합니다.
 - 7) 교관·교육생 서명은 작성사유가 발생한 교관·교육생이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확인 서명합니다.
 - 8) 관리자 서명은 관리자가 자필로 확인 서명합니다. (대장관리자가 직접 서명합니다)